의안번호		제 302 호
의	결	2015년 월 일
연 월	일	(제 회)

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5년 11월 2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302

제출연월일 : 2015년 11월 23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 시행(2015.7.1.)에 따라
-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, 기능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

2. 주요내용

- 조례명 개정 : "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"를 "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개정
- 위원회 기능, 구성 개정 :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추가, 보완
- 관련조례 개정(부칙) :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,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등 개정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6.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"를 "충청북도 사회보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"를 "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40조"로, "사회복지위원회"를 "사회 보장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"를 "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- 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- 4.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
- 5.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제1항 중 "30명"을 "40명"으로, "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"을 "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호선한다"를 "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호"를 "각 호"로, "위촉한 다"를 "위촉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
- 2.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
- 3.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
- 4.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
- 5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6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
- 7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제4조제1항 중 "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"를 "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"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 다.

제5조제2호 중 "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제3항"을 "법 제40조제4항"으로, "수 행하는데"를 "수행하는데"로 한다.

제7조제4항 본문 중 "소집하고자 할때에는"을 "소집할 경우"로, "7일"을 "5일"로, "통지 및 송부하여야"를 "서면으로 알려야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"을 "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"으로, "사회복지 관련 담당사무관"을 "사회보장업무 담당사무관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"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"를 "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"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2항 중 "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"를 "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"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아 혅 했 개 정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 제1조(목적) ----- 「사회보 지사업법」제7조의 규정에 의 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 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| 자 발굴에 관한 법률 | 제40조 -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회보장위원회의 -----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--. 제2조(기능) 충청북도 사회복지 제2조(기능) 충청북도 사회보장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워회 -----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. 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 | 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 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중요한 사항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5조의 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 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 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획 수립에 관한 사항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령」 제29조제1항 및 「의료급 사항 여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4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"ㅣ 4.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

요 사항

도지사"라 한다)가 회의에 부

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 5명 이상 <u>30명</u> 이하로 구성하 며, <u>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</u> 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<u>각호의</u>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<u>또는 위촉한 다.</u> <<u>단서 신설></u>

 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
 1.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

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

5.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충청북
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
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<u>사항</u>
제3조(구성) ①
40명
, <u>사회보장업무</u> 담당국장은
당연직 위원
②
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
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
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
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각 호의
<u> </u>
또는 위촉한다.
다만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
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
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
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
<u>없다.</u>
1.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

- 2.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
- 3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 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
- 4.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 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
- 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대표자
- 6. 공익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|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- 7.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제 📗 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 지회에서 추천한 사람

8. • 9. (생략)

- 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 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는 위촉 위원중에 다음 각 호의

- 2.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 의 대표자
- 3.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 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.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
- 5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서 추천한 사람
- 6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제 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 지회에서 추천한 사람
- 7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

8. • 9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 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 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<삭 제>

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제3 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<u>수 행하</u> 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
- 3. (생략)
- 제7조(회의 및 의사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 하 다고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⑤ (생 략)
- 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기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사회복지 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.
 - ②·③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2. <u>법 제40조제4항</u>
<u>수행하</u>
<u>는데</u>
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회의 및 의사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④ <u>소집할</u>
<u> 경우</u> <u>5일</u>
<u>서면으로 알려야</u>
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
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
<u>사회보장업무 담당</u>
<u>사무관</u>
<u>→ → □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- 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 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,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,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0조(시·도사회보장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시·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.
- ②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 - 1. 시 · 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·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시 · 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 - 3. 시·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 - 4. 시·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
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 - 1.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
 - 2.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
 - 3.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
 - 4.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

- 5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워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6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 서 추천한 사람
- 7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
 - 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 -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
 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7.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(이하 "사회복지사업"이라 한다)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「형법」 제28장·제40장(제360조 는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다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거나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⑤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- 제4조(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(이하 "시·도사회보장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- ④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있다.
- ⑤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 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 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

제11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-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한다.
 - 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 - 3.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4.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
 - 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 의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.

□ 충청북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(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)

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료 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은 **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 회**가 대행한다.